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하영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828

발의연월일: 2021. 4. 30.

발 의 자:하영제·조명희·박성민

이 영・정운천・이태규

박덕흠 • 서일준 • 김형동

김용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 및 주 거환경에 관한 사항,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,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, 해당 조사통 계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로 활용하고 있음.

조사방법은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선정하고 방문 및 대면조사 등의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·분석하고 있으며, 과거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다가 최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음.

2019년도의 경우 17개 시·도, 표본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안정성, 주거비 부담, 주거이동성, 주거수준, 주거의식과 가치관 등에 대해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.

그런데, 주거실태조사의 방식과 주기와 관련하여 전국단위의 표본조 사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, 일정 기간 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 여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실태 현황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주거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 본조사의 방법으로 하되,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 도록 개선함으로써 현행 표본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제6항 신설). 법률 제 호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 시행하는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제20조(주거실태조사) ① ~ ⑤ | 제20조(주거실태조사) ① ~ ⑤ |
| (생 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<u> <신 설></u> | ⑥ 제3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|
| |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|
| | 의 방법으로 실시하되, 5년마다 |
| |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 |
| | 시하여야 한다. |
| <u>⑥</u> (생 략) |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 |